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희망주야간보호센터

1.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계약내용 변경(장기요양 인정등급,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사항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계약목적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의거 설치된 희망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3.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한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지원, 건강회복 및 유지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상호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월 24일 이용 시(주 6일, 본인부담율 15%기준)

등급(8~10시간)	수가(24일)	식재료비(24일) 1식=3,500원	계
3등급	208,650	168,000	376,650
4등급	202,960	168,000	370,960
5등급	197,920	168,000	365,920

*이용일수와 이용시간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며 경우에 따라 월 한도액 초과로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음.

4.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자(갑)와 서비스제공자(을) 그리고 보호자(병)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자의 권리를 가진다.

1)‘갑’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 ② 시설의 건전한 이용분위기 조성의무
- ③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 ④ 기타 시설이용 규칙이행 의무

2)‘을’의 의무

- ① 시설이용 1개월 이내에 건강상태를 고려한 서비스제공수립 및 ‘병’에게 전달하고 서비스제공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 ② ‘갑’의 건강관리 협조의무
- ③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의무
- ④ 식사제공 및 이용상담, 조언 및 이용편익 제공의무
- ⑤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⑥ 기타 ‘갑’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제공

3) ‘병’의 의무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갑’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의무

⑤ 기타 시설 협조요청 이행 의무

4) 계약자의 권리

① 계약자는 월 이용료, 프로그램 계획, 식단표, 개인정보취급 방침 등 각종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② 필요시 송영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 서비스 개선을 요청하거나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신병이상시 즉시 연락을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수급자 및 계약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갑’의 해지

①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 종결을 결정할 수 있다.

2. ‘을’의 해지

①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②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갑’의 이용료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갑’ 또는 ‘병’이 이용료 납부에 어려움이 생겨 사전에 ‘을’에게 사유를 전달하고 납부일자와 방법등을 논의하는 등 이용료 납부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경우에는 ‘갑’ 또는 ‘병’과 ‘을’의 합의하에 상환일,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타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갑’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안전이나 식사 등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을’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할 경우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